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나-A5-9-1
제 2 조(적용범위)	나-A5-9-1
제 3 조(용어의 정의)	나-A5-9-1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최고경영자

제 4 조(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의무)	나-A5-9-2
-----------------------	----------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5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나-A5-9-3
제 6 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나-A5-9-3
제 7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나-A5-9-3
제 8 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나-A5-9-4

제 3 절 자율준수사무국

제 9 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나-A5-9-4
제 10 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나-A5-9-4

제 4 절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 조직과 구성

제 11 조(BU·센터별 자율준수 관리조직 설치)	나-A5-9-5
제 12 조(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 등의 업무)	나-A5-9-5

제 5 절 임직원

제 13 조(임직원의 의무)	나-A5-9-5
-----------------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제 14 조(선언 목적) ----- 나-A5-9-5

제 15 조(선언 방법) ----- 나-A5-9-6

제 2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 16 조(자율준수편람) ----- 나-A5-9-6

제 3 절 위험성평가 및 사전업무협의제도

제 17 조(위험성평가) ----- 나-A5-9-6

제 18 조(사전업무협의제도) ----- 나-A5-9-6

제 4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9 조(모니터링 방법) ----- 나-A5-9-7

제 20 조(모니터링 결과 보고) ----- 나-A5-9-7

제 21 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나-A5-9-7

제 5 절 교육프로그램

제 22 조(교육의 실시) ----- 나-A5-9-8

제 23 조(교육의 내용) ----- 나-A5-9-8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24 조(제재의 원칙) ----- 나-A5-9-9

제 25 조(제재의 종류 및 기준) ----- 나-A5-9-9

제 26 조(제재의 절차) ----- 나-A5-9-11

제 26 조의 1(이의신청 및 재심) ----- 나-A5-9-12

제 7 절 문서관리

제 27 조(문서관리) ----- 나-A5-9-12

제 28 조(주요 관리대상 문서) ----- 나-A5-9-12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외

제 29 조(개 폐)	나-A5-9-13
제 30 조(인센티브 등)	나-A5-9-13
제 31 조(운영상황 공시)	나-A5-9-13
제 32 조(운영성과 평가)	나-A5-9-13
제 33 조(위임)	나-A5-9-13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나-A5-9-14
제 2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나-A5-9-1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 ② 경쟁법 준수에 동의한 당사의 협력업체(계약업체,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 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 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외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등을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 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사무국” 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 와 “BU·센터별 자율준수사무국” 을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7.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협력업체”는 회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당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한 업체 또는 당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9.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업계 모임”이란 ‘회의’, ‘작업반’ 등 그 명칭이나 ‘정보공유’ 등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는 둘 이상의 경쟁 사업자와의 정기 또는 부정기 모임(일회성도 포함)을 말한다.
11. “위험관리 부서”라 함은 구매, 조달, 영업, 입찰 및 수주 등 경쟁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회사의 자율준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최고경영자

제 4 조(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기업 운영의 핵심요소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여 임직원이 스스로 경쟁법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5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제 1 항의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된 임원으로 경쟁법에 관한 법률 지식이 풍부하거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 6 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경쟁법 위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3. 경쟁법 준수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실시
 4.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7.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의 결정 및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8.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9.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 서약서 징구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직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3 절 자율준수사무국

제 9 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둔다.

제 10 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보좌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실무수행
2.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3. 이 규정 및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보고
4. 회사 각 BU·센터의 자율준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교육 주관
7.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 4 절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 조직과 구성

제 11 조(BU·센터별 자율준수 관리 조직 설치)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율적인 자율준수 업무를 위해 BU·센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를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로 지정한다.
- ②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직속의 BU·센터별 자율준수사무국을 둔다.

제 12 조(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 등의 업무)

BU·센터별 자율준수관리자와 BU·센터별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U·센터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총괄
2. 자율준수사무국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
3. BU·센터 공정거래 관련 교육, 조사, 보고 활동
4. BU·센터 자율준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 5 절 임직원

제 13 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이 규정과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제 14 조(선언 목적)

최고경영자는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한다.

제 15 조(선언 방법)

-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은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제 1 항의 문서는 사내외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한다.

제 2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 16 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규칙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조달, 계약, 영업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위험성평가 및 사전업무협의제도

제 17 조(위험성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경쟁법에 관한 위반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사전업무협의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사전업무협의 를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② 사전업무협의와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경쟁법에 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9 조(모니터링 방법)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 등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 ②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의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 20 조(모니터링 결과 보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19 조에 따른 모니터링 운영사항을 분기 1 회 이상 확인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 제보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 제보자가 내부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내부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 제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내부 제보 모니터링 팀의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모니터링 팀의 업무는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업무 중 알게 된 일체 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절 교육 프로그램

제 22 조(교육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규정 및 경쟁법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2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경쟁법 위반자
 - 2. 교육 미이수자
 - 3. 자율준수관리자가 특별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③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 후 교육대상자의 이수율, 만족도, 이해도, 요청 사항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자율준수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교육의 내용)

- ① 교육내용은 경쟁법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② 자율준수 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24 조(제재의 원칙)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나 부서가 경쟁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재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 행위의 시정이 모니터링 전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25 조(제재의 종류 및 기준)

- ① 경쟁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의 종류

- 1) 상벌심의위원회 징계심의 의뢰
- 2) 경고
- 3) 시정요구

2. 제재의 기준

1) 상벌심의위원회 징계심의 의뢰

- 가. 경쟁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나. 경쟁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훼손시키는 경우
- 다. 경쟁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준수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바.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2) 경고

- 가. 경쟁법 위반 정도가 미약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시정요구를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 다.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 라.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마. 업계 모임 참여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사. 제 22 조 제 2 항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 가.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나. 경쟁법 준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② 경쟁법을 위반한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 경고

- 가.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해당 부서의 2 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 제보가 집단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2. 법 위반 방지 교육

- 가. 부서의 소속 임직원이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나. 당해 부서가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아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③ 경쟁법 준수를 서약한 협력업체가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미한 위반인 경우 시정요구 또는 경고
- 2. 중대한 위반인 경우 징계 의뢰(입찰 참가 제한 또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제 26 조(제재의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25 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하여금 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지시를 받은 자율준수사무국은 조사 후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가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제 1)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인사담당 주관부서에 징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가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제 2) 내지 제 3) 또는 제 25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부서의 장과 소속 BU·센터의 장 및 인사담당 부서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25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교육실시 주관부서로 자율준수사무국 또는 BU·센터별 자율준수사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가 제 25 조제 3 항제 1 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협력업체 및 관련 BU·센터의 장과 계약 관련 주무 부서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가 제 25 조제 3 항제 2 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 관련 주무 부서에 입찰 참가 제한 또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⑧ 제 4 항 내지 제 6 항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결과를 수령한 위반행위자나 부서의 장 또는 협력업체의 장은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즉시 자율준수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⑨ 제 5 항에 의한 법 위반 방지 교육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교육 실시 주관부서로 지정받은 자율준수사무국 또는 BU·센터별 자율준수사무국에서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타 규정과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제 26 조의 1(이의신청 및 재심)

-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회에 한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결정은 원 처분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차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이의신청과 재심에 관하여 타 규정과 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규정과 규칙 등에 따른다.

제 7 절 문서관리

제 27 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리 대상 문서를 생산한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문서를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28 조(주요 관리 대상 문서)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주요 관리 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 문서
3.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 문서
4. 내부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포상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 결과 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외

제 29 조(개폐)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자율준수사무국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② 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 ③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 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인센티브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1. 내부 제보자
-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제 31 조(운영상황 공시)

- ①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해 제재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기 1 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3 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 12. 1>

제 1 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과 회사내 다른 규정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자율준수 규정이 우선한다.

부 칙 <2015. 3. 20>

제 1 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2021. 11. 1>

제 1 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2022. 12. 1>

제 1 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2023. 12. 22>

제 1 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3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